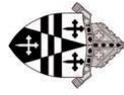




REVISED JUNE 2015 | REVISED JANUARY 2018

Safe
ENVIRONMENT
protecting the young & vulnerable



ARCHDIOCESE SEATTLEOF
Avenue 9th 710 98104WA/Seattle,

미성년자 및 취약 성인의 학대 또는 방임 의심 신고



시애틀 대교구
성직자,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침



정책안내:

시애틀 대교구는 교구민과 성직자 및 평신도 봉사자 간의 성스러운 신뢰의 유대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닮음으로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성적 학대, 성적 비행 및 성적 괴롭힘은 교회 공동체나 사회 전반에 용납될 수 없는 유해한 행위입니다.

목회적 돌봄, 연민, 치유 및 화해는 가톨릭 공동체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입거나 신뢰의 성스러운 유대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었을 때, 시애틀 대교구는 이러한 문제를 민감하고, 개방적이며, 직설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가치는 성직자, 직원 또는 자원 봉사자에 의한 미성년자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비극을 다룰 때 항상 우리의 대응을 안내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seattlearchdiocese.org/SEP/Default.aspx
대교구 핫라인: 1-800-446-7762

Safe
ENVIRONMENT
protecting the young & vulnerable



학대란 무엇인가요?

학대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18 세 미만) 또는 취약 성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복지를 해치거나 위협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학대의 네가지 기본 유형은 무엇인가요?

1. **신체적 학대** 는 성인이 어린이나 취약 성인을 다치게 하고 그것이 사고가 아닌 경우 발생합니다
2. **방임** 은 어린이나 취약 성인의 건강, 복지 또는 안전을 해치는 모든 학대 또는 태만을 의미합니다.
3. **정서적 학대** 는 성인이 어린이나 취약 성인에게 언어적 공격 또는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4. **성적 학대** 는 어린이나 취약 성인과 성인 또는 훨씬 나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 사이의 성적 접촉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성적 접촉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타 착취적 행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적절한 언어적 자극
-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성적 사진을 찍거나 보여주기
-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게 포르노그래피나 성인 성행위 노출하기

취약 성인은 누구인가요?

- 스스로 돌볼 수 없는 60 세 이상의 사람
- 특정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
- 법적 보호자가 있는 18 세 이상의 사람
- 면허가 있는 건강 호스피스 또는 가정 건강 관리 기관을 통해 또는 스스로 고용한 보조인으로부터 가정 내 돌봄을 받는 사람

의무 보고자는 누구인가요?

워싱턴 주 법에 따르면 학대가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48 시간 이내에 의심되는 학대를 보고해야 합니다. 교사, 의사, 상담사, 경찰관, 사회복지사, 건강전문가와 같은 도움을 주는 직업의 사람들은 법적으로 워싱턴 주 학대 당국(RCW 26.44.030)에 학대 또는 방임 의심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애틀 대교구 정책에 따르면 다음 그룹(교회 직원)은 모두 어린이 및 취약 성인에 대한 의심되는 학대를 보고하는 의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제(성사 고백 제외)

부제

직원:

- 모든 학교직원
- 어린이나 취약 성인과 함께 일하는 목회 직원:
 -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 성인 입문 과정(RCIA) 및 어린이 입문 과정(RCIC) 강사
 - 종교 교육 직원
 - 청소년 사역자

자원봉사자:

- 교리 교사
- 코치
- 스카우트 지도자
- 청소년 지도자
-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감독 없이 어린이 또는 취약성인과 접근하는 모든 개인 워싱턴 주 사회복지보건부(DSHS) 또는 지역 당국에 선의로 신고하는 개인은 보복 조치로부터 보호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 또는 취약 성인이 학대 또는 방임을 당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교회 직원은 그러한 사건을 보고하거나,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법 집행 기관 또는 워싱턴 주 사회복지보건부(DSHS)에 첫 번째 기회에, 그러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후 48 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십시오:

- 이름
- 나이(대략적인 나이)
- 주소
- 전화번호
- 부모 또는 보호자 이름
- 학대의 성격
- 가해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알고 있는 경우)

(선의로 신고한 경우,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민사 또는 형사 책임으로부터 면책됩니다.)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이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9-1-1 에 전화하십시오.

참고: 성직자, 대교구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에 의한 성적 학대 또는 비행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학대가 의심된 후 48 시간 이내에 대교구 학대 핫라인에 전화해야 합니다

시애틀 대교구 핫라인

1-800-446-7762

또는 다음 주소로 대주교에게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710 9th Avenue, Seattle, WA 98104